



## 보세공장제도 활용하세요

### III 보세공장 개요

- ▶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합니다.
- ▶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, 가공 무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.

### III 보세공장 업무 처리 절차

- ▶ 업무절차(종합)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- ▶ 반입원재료별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- ▶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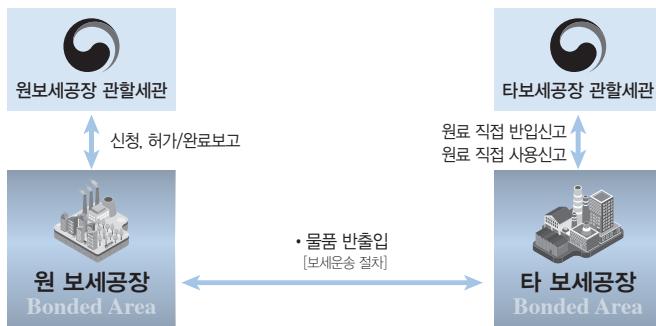
- ▶ 장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

- ▶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보세공장 이외 다른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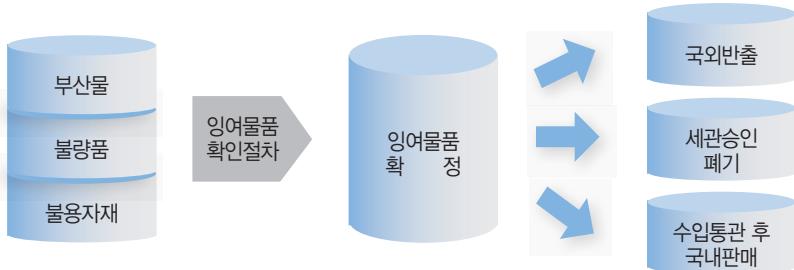
### III 과세적용시기

- 내·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 또는 원료과세 적용 신청은 원재료의 “사용신고” 전에 해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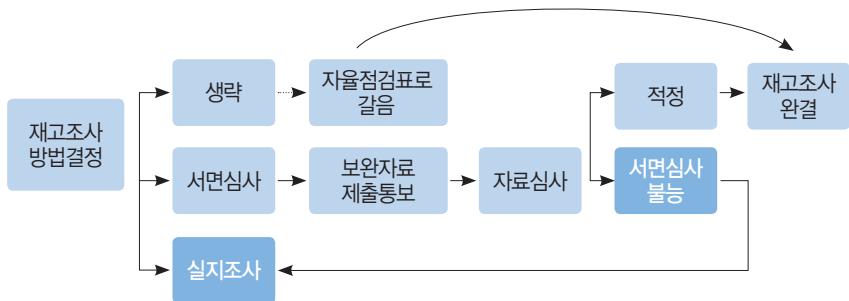
### III 잉여물품 처리절차

-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‘잉여물품관리대장’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,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함



### III 소요량관리 및 재고조사

- 운영인은 생산제품에 대한 ‘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’를 작성·보관해야 하며,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재고관리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‘자율점검표’를 세관장에게 제출
-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심사하여 재고조사 생략,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 여부를 결정



#### 문의처

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-481-7823



#### 관련 규정

- 「관세법」 제185조(보세공장)
- 「관세법」 제188조(제품과세)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04조(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)
- 「관세법」 제189조(원료과세)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05조(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)
-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06조(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)
-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07조(재고조사)
-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